



제 428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상한액 규정〉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831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상한액 규정	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3일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축·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전단).

Ⅲ. 검토의견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상한액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에 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 ----- ----- ----- ----- ----- ----- ----- ----- -----

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5. (생략) ② ~ ⑧ (생략)	-----징수하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 -----. -----. 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¹⁾,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현행법 시행령 제13조)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 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 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현행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가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방식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점용료·사용료가 실제 점용·사용 행위와 다르게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해상에서의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2)에 따라 이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50%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별도의 상한을 마련하는 경우 이중적으로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다음으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로, 산업별로 점용·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조건에 따라 지가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경우에만 그 상한을 매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경우, 공유수면 자체의 공간 가치(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재 독점에 따른 임대료 성격으로 입지별 요금 적용)와는 무관한 기준이 적용되어 제도의 목적과 괴리가 생길 수 있고³⁾, 매출액에 어느 정도의 비율을 곱하여 기준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범위 내에서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점용료·사용료 징수 주체인 공유수면관리청이 대부분 지자체 임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전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도로, 하천, 국유재산 등도 동일한 지가 기준 체계 운용

예: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산정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점·사용료 현황

연도	공유수면관리청	허가건수(건)	허가면적(m ²)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천 원)
2020	지방청	425	3,977,938	13,431,410
	지자체	8,742	25,126,193	40,163,978
	새만금개발청*	4	1,231,378	1,450,701
	합계	9,171	30,335,509	55,046,089
2021	지방청	516	8,187,124	24,686,080
	지자체	10,340	44,005,820	19,367,924
	새만금개발청	9	11,849,809	6,592,217
	합계	10,865	64,042,753	50,646,221
2022	지방청	404	4,224,236	15,013,879
	지자체	9,423	91,263,089	73,994,085
	새만금개발청	10	10,597,127	0
	합계	9,837	106,084,452	89,007,964
2023	지방청	441	59,041,979	15,893,096
	지자체	10,168	58,704,128	23,142,863
	새만금개발청	3	9,473	0
	합계	10,612	117,755,580	39,035,959
2024	지방청	450	7,716,535	5,078,397
	지자체	9,658	45,099,481	14,994,510
	새만금개발청	3	8,424	499
	합계	10,111	52,824,440	20,073,406

출처: 해양수산부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예상되는 우려 사항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공유수면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개별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한정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면 공유수면 관리체계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18